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24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이광희·김 윤·박지원

김성환 · 임미애 · 김문수

박정현 · 임호선 · 문금주

박해철 · 양문석 · 이재강

조계원 · 권향엽 · 채현일

박희승 • 박용갑 • 허성무

강준현 • 윤건영 • 김우영

이재관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 및 단체 대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,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,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의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지는 않은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,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,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, 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, 정보시스템 구축

및 운영 기준과 관리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 폭을 확대하여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조, 제8조제2항,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등).

법률 제 호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사람으로부터"를 "사람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사람에게"를 "사람, 법인 또는 단체에게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사람에"를 "사람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에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타인의"를 "타인, 다른 법인 또는 다른 단체의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사람에게"를 "사람, 법인 또는 단체에게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사람"을 "사람, 법인 또는 단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개인별"을 "기부자별"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
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에"를 "제3항에"로, "바에 따라 관계"를 "요건을 갖춘"으로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과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연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"주민으로부터"를 "주민 또는 주 사무소가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고향사랑 기부금"이란 지방	1
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	
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	
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	
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	
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	사람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
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	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
하는 금전을 말한다.	<u>닌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</u>
2. "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"이	2
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, 정	
보통신망의 이용, 그 밖의 방	
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	
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	
줄 것을 다른 <u>사람에게</u> 의뢰	사람, 법인 <u>또</u>
•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	는 단체에게
말한다.	
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	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
주체 및 대상) ① 지방자치단	주체 및 대상) ①

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 민이 아닌 <u>사람에</u> 대해서만 고 향사랑 기부금을 모금·접수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5조(기부의 제한) ① 누구든지 <u>타인의</u>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(생략)

제6조(기부·모금 강요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업무·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② (생 략)

- 제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) ① (생 략)
 -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 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<u>사람</u> (이하 "기부자"라 한다)에게 지

<u>사람 또는 주 사무소</u>	<u>-</u>
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	-
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 또	-
<u>는 단체에</u>	-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
제5조(기부의 제한) ①	-
타인, 다른 법인 또는 다른 단	-
체의	-
	-
<u>.</u>	
② (현행과 같음)	
제6조(기부・모금 강요 등의 금	-
지) ①	-
	-
사람, 법인 또는 단체에게	-
	-
<u>.</u>	
② (현행과 같음)	
제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	<u>-</u>
및 상한액) ① (현행과 같음)	
②	-
	-
<u>사람</u>	2
법인 또는 단체	-

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③ <u>개인별</u>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 다.
- ④ (생 략)
-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 -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"고향사랑기금"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른 모집·운용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<u>.</u>
③ <u>기부자별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경제
활성화 지원

4. (생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12조(제도의 홍보·연구 및 지 제12조(제도의 홍보·연구 및 지 원) ① (생략)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 업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반환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

-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 원)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<u>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</u> 항 각 호의 공공기관과 「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의 연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고향 사랑기부제 연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- -----제3항에-----갖춘----

제14조(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제14조(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) ① -----

자에게 반환하고, 교부된 영수 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1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1. -----지방자치단체의 <u>주민으로부터</u>

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	_	_	_	_	_	_	_	_	_	_	_	-								_							
																				•							

-----주민 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<u>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</u> 체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로부터-----

- 2. ~ 7. (생략)
- ② (생략)

- 2. ~ 7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